

# 육아 확인서

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인 이름 :

생년월일 :

연락처 :

주 소 :

위 수급자격 신청인 ( )의 자 (아기 이름 : )를  
본인 (육아자 : )은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 
육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위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 
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자(육아자) 이름 :

생년월일 :

연락처 :

주 소 :

2019년  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 일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16조, 제118조에 의거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